

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선갑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9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  
발 의 자 : 김선갑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기대·김생환·김인제·김창수·  
맹진영·박호근·서영진·송재형·  
이윤희·최판술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서울연구원 수행 사업 중 하나로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하고, 의회 의정 관련 연구·조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연구원의 수행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호·제2호·제4호).
- 나. 의회 의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·조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6629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3조제1호 중 “시 행정”을 “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 중 “시 행정”을 각각 “시 행정 및 의회 의정”으로 하며, 제7조제1항 중 “시는 시정과”를 “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”로 하고, 제10조제1항 중 “서울시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